

## 업무 위탁 계약서

(甲)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표이사 : 권오현

(乙)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문용

위탁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甲")와 수탁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甲"이 가스공급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를 "乙"에게 위탁하여 완성하게 하고, "甲"은 그 완성에 대한 대가를 "乙"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甲"과 "乙"이 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계약에 규정된 내용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의 기간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 (본 업무의 범위)

- ① "乙"이 수행하는 본 업무의 범위는 별첨1 [위탁업무세부내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② 본 업무 내용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확정한다.

### 제4조 (수탁인의 자격)

"乙"은 본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본 업무의 독립성)

"乙"은 본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6조 (지식재산권)

- ① "乙"이 "甲"을 위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중 본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甲"의 소유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甲"은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乙"은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한다.

## 제7조 (현장대리인)

- ① "乙"은 본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한다.
  1. "乙"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甲"과의 연락 및 조정
  3. "甲"의 주문서에 의한 주문 사항의 수임, 특별 요청 사항의 처리
  4. "乙"의 직원에 대한 "甲"의 안전관리,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 내용에 관한 사전 고지 및 교육
  5. 기타 본 업무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
- ② 본 업무에 관한 "甲"의 주문, 지시 등은 "乙"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실시되며, "乙"은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부재 등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甲"에게 통보하고 임시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乙"의 현장대리인은 본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乙"은 현장대리인의 선임, 교체 시 "甲"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본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에서 본조 제1항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乙"은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업무수행 능력의 보장)

- ① "甲"은 본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격증, 경력 등 업무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력(이하 "적격 인력")을 요구할 수 있고, "乙"은 본 업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甲"이 전항에 정한 적격 인력을 요청할 경우 "甲"과 "乙"은 적격 인력의 기준,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 ③ "甲"과 "乙"은 본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 교육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며, 교육 방법, 비용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2장 위탁비

#### 제9조 (위탁비)

- ① "甲"이 본 업무의 대가로 "乙"에게 지급할 위탁비 및 위탁비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2.[위탁비 세부내역]에 의한다.
- ② "乙"의 직원에 대한 쳐우개선을 목적으로 "乙"은 본 업무를 도급받기 위하여 "甲"에게 제안하는 단계에 본 업무의 위탁비 중 "乙"이 직원에 지출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80%로 제시하였으며, "乙"은 본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해당 비율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본 항의 인건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본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다.
- ③ "甲"과 "乙"은 위탁업무의 조정,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하여 위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위탁비의 지급)

- ① 위탁비는 별첨 2.[위탁비 세부내역]의 금액을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확정된 위탁비를 양자가 위탁비의 정산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자료를 구비하여 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甲"은 익월 말일까지 "甲"의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乙"에게 지급한다.
- ③ 위탁비 지급일과 지급방법 등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 (위탁비의 사후정산)

"乙"에게 이미 지급된 위탁비가 과다 혹은 과소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甲"은 부당하게 감액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자료제출 등)

- ① 위탁비의 산정이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한 보전을 전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위탁비 산정에 근거가 된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항과는 별도로 "甲"은 제9조 제2항에 정한 "乙"의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乙"에게 위탁비 산정 · 집행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乙"은 본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甲"의 요청 시 당해 자료에 대한 열람 ·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④ "甲"은 사업장내 시설관리권 및 정보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乙"의 임직원이 "甲"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범위, 반출입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통제 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 ⑤ "乙"은 본 조에 정한 "甲"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 약정 체결, 열람자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甲"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료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乙"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위탁업무의 완성

### 제13조 (통보의무 및 방법)

"甲"과 "乙"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 자료제출, 통지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4조 (검증)

- ① "甲"은 "乙"이 완성한 결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며, 결과의 인도, 검증, 승인에 관한 방법, 조건, 기준 등에 관하여는 "甲"과 "乙"이 별도로 합의한 기준에 의한다.
- ② "甲"은 검증 결과 "乙"의 수행 결과가 별첨1. [위탁업무 세부내역]의 내용 또는 "甲"과 "乙"이 합의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고, "乙"은 "甲"의 재작업 요구가 부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甲"이 요청한 조치를 취하여 재검증받아야 한다.
- ③ "甲"은 "乙"에게 검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담보책임)

"甲"은 "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본 업무의 하자에 대하여 "乙"에게 무상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장 물품 등 제공

### 제16조 (물품 등 제공)

- ① "甲"은 "乙"에게 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 SYSTEM 등(이하 "제공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乙"은 제공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시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공 물품의 품목 및 사용료 등 세부사항은 별첨3.[물품대여약정서]에 의 한다.

### 제17조 (하자통보)

- ① 제공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가 지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乙"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 (목적외 사용금지)

"乙"은 "甲"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공 물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수익, 전대, 사용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 제5장 계약해제 및 해지



### 제19조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워크아웃, 회생절차 신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으로 본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횡령 등 금융사고로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甲" 또는 "乙"에서 발생한 분쟁, 집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5. "乙"이 제출한 위탁비 산정 자료 등에 중요한 허위사항이 있는 경우
  6. "乙"이 본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준법 확인서 등)가 중요한 점에서 허위, 과장 또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7. "乙"이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본 업무와 관련있는 개별법령, (3) "乙"의 고유 업무와 관



련된 개별법령을 위반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8. 기타 "甲" 또는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9. "乙"이 제18조를 위반하여 제공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② "甲"과 "乙"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0조 (계약 해제 및 해지 후 조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乙"은 해제 또는 해지 당시 "乙"이 점유하고 있는 "甲"소유의 자료, 재산, 문서 및 정보 등 일체를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장 일반사항

##### 제21조 (노동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의무)

- ① "乙"은 본 계약상 "乙"의 직원에 대한 유일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② "乙" 또는 "乙"의 직원은 "甲"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시설관리권 및 정보보호정책에 기반한 내부규칙(이하 "내부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乙"은 그 직원이 "甲"의 내부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乙"이 본 계약 체결시 "甲"에게 제출한 서류(준법 확인서 등)는 중요한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④ "乙"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서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본 계약과 관련된 "乙"의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실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그 결과물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안전조치)

- ① "乙"은 본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甲"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안전 또는 위생상의 위험, 유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甲"에게 알리고 "甲"과 "乙"은 신속하게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② "乙"은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乙"의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甲"은 이러한 활동 내역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제23조 (손해배상)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부주의와 계약위반 또는 다른 근거에 기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부록1 [위탁 업무 내역서]에 기술된 업무 내용 및 범위에서 위탁비의 3개월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甲과 乙은 이익 손실이나 비가동시간, 간접적이거나 순수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제한은 본 계약서의 조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 또는 "乙"("乙"의 임직원 및 "乙"이 사실상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甲"과 "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중 습득한 상대방의 기밀 누설
2. "甲" 또는 "乙"의 시설, 물품 및 집기 등의 파손 및 도난
3. "甲" 또는 "乙"에 대한 음해, 비방 및 선동 관련 일체의 행위
4. 배임 행위 또는 사기, 횡령 등 파렴치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 거부
6. 기타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방해

③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甲"에게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甲"은 위탁비와 상계할 수 있다.

### 제24조 (위약별에 관한 특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의 대표자에게 금 20,000,000원을 한도로 차등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1. "乙"이 본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제1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 제4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乙"의 대표가 본조 전항의 위약벌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 (양도금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재위탁할 수 없다.

### 제26조 (비밀유지)

① "甲"과 "乙"은 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 또는 업무상 관련없는 자에게 공개 혹은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② "乙"은 "甲"의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부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은 본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상대방 정보의 보호, 중요성,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27조 (지원 등)

"甲"은 "乙"이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乙"과 협의

하여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乙"의 직원이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甲"의 사업장 내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머물게 되더라도 Shared Service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8조 (안전관리비 등)

- ① "甲"과 "乙"은 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 ② "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乙"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9조 (기 타)

- ①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양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③ 본 계약에 첨부되는 아래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④ 본 계약은 2012년 10월 1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1. 위탁업무 세부내역

별첨 2. 위탁비 세부내역

별첨 3. 물품 대여 약정서

별첨 4. 이행보증각서

별첨 5. 협력업체 출퇴근버스 이용 신청서

별첨 6. 비밀유지계약서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11월 9일

(甲)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 권 오현 (인)



(乙)

상호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주소 :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 문용 (인)



## 별첨 1. 위탁업무 세부내역

본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위탁 업무 세부내역

대상	단가항목			주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R2, 15 라인, 16 라인	교체	47리터	옥내	1일/1회
			옥외	1일/1회
		BSGS	-	1일/1회
		Precursor	200리터	1일/1회
			19리터	1일/1회
		ARS	-	1일/1회
		ISO Trailler	-	1일/1회
	배관계 Hook-up	가압		1일/1회
		라인체크		1일/1회
		Turn-on		1일/1회
		Pumping		1일/1회
		철거		1일/1회
	공급설비유지보수	단순 Part 이상여부 점검/Test/교체		1일/1회
	보고서 작성	일, 주, 월보, 각종Check결과…등		1일/1회
	고객지원업무	소재,환경안전,현업압력조정, 작업변경 점, 품질변경 점 관리 및 협의, 불합리적출		1일/1회
	원자재 입,출고 및 수불 관리	소재입출고/공정전수불/비정기품목(유효기간)관리		1일/1회
	공급설비점검	일일,주간 공급설비 및 부대설비 점검관리		1일/2회
	공급 품질 모니터링	24h 모니터링 및 Alarm 원인 파악 및 분석, 개선		1일/1회
	Part 수급 관리	Part 교체 수급 및 정산 관리		1일/1회
	DRI 작성 및 D-1 Risk 관리	DRI 작성 및 D-1 Risk 검토		1일/1회

### □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

구분	성명	직책/직급	비고
1	남재현	차장	현장대리인
2	이운학	과장	현장대리인
3	한진규	과장	현장대리인
4	최기열	과장	현장대리인
5	최병도	과장	현장대리인
6	최성열	대리	현장대리인
7	박민영	대리	현장대리인

별첨 2. 위탁비 세부내역

□ 위탁비 관련 세부내역

구 분		세부사항	비고	
단가 항목	가스운영 업무	단가	₩2,775,260,762원/년	
		단위	연간 Turnkey	
단가 지급형태		단가/12개월로 月 단위 정산 지급	-	
단위 지급방법		당월 확정분을 익월 말일에 "乙"의 계좌로 입금	-	
단가 추가업무 비용		추가입무 발생時 별도 <i>견적</i> 후 정산함	-	

\* 단, 위탁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甲"과 "乙"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한다.

별첨 3.

## 물품 대여 약정서

1. "甲"은 "乙"에게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라 "乙"에게 아래의 제공 물품을 무상(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
2. "乙"은 제공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하며 계약종료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 물품의 성질상 사용에 따른 마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제공 물품의 사용 중에 발생한 제반 사항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甲"과 "乙"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4. 제공 물품 내역서

번호	품명	총수량 (개)	사용료
1	모니터링 PC	19	무상임대
2	업무용 PC	18	무상임대
3	책상(회의테이블 포함)	54	무상임대
4	의자	83	무상임대
5	Cylinder Cart	16	무상임대
6	수동 리프트	6	무상임대
7	전동 리프트	2	무상임대
8	He Detector	2	무상임대
9	개인보호구(SCBA)	18	무상임대
10	가스감지기	1	무상임대
11	온도측정기	2	무상임대
12	냉온수기	3	무상임대
13	모바일폰(라인용)	11	무상임대

5. 기타 특약사항

## 이 행 보 증 각 서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회사"가 2012년 11월 9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의 설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회사"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설비, 시설 또는 자산에 멸실,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함으로써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위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문용 ("본인")은 "회사"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9일

"회사"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 문 용

"본인" 성명 : 이 문 용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중



별첨 5.

## 협력업체 출·퇴근버스 이용 신청서

### 1. 회사 개요

- 회사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133-81-27249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 전화 : 031) 8047-7000
- 대표 : 이문용

2. 출입목적 : 업무수행

3. 관련부서 : Facility팀 GCS기술PJT

4. 기간 : 2012. 10. 1. ~ 2013. 9. 30.

5. 이용인원 : 업체 재직인원에 한함

6. 이용노선 : 삼성전자 출퇴근버스 운행 전 노선

상기와 같이 귀사의 출퇴근 차량을 당사 사원도 무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로 인해 당사 사원이 사상시에는 당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로 이해 발생되는 비용 일체는 당사에서 부담토록 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보상들을 귀사에 청구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서약자

업체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 : 이문용 (안)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하

## 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H2 Site Gas/Precursor 공급시스템 운영 (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양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 김 태호

을 : 남재현

### 제 3 조 (비밀 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자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

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 제 6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 제 8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제 9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0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Drop 된 경우, iii)"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 제 12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첨부 :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11. 9.

"갑"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을"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이 문 용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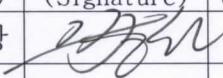


첨부

##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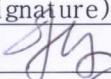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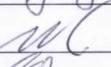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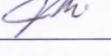
아래 참여자는 "본 계약"(상기 비밀유지계약서)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삼성전자주식회사>

No	부서명 (Department)	부서장 (Manager)	참여자 (Participant)	서명/印 (Signature)	사원번호 (Employee NO)	비고 (Remark)
1	Facility팀	김태호 부장	박광선 과장		91000065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No	부서명 (Department)	부서장 (Manager)	참여자 (Participant)	서명/印 (Signature)	사원번호 (Employee NO)	비고 (Remark)
1	TGS본부/가스운영팀	남재현 차장	이운학 과장		2051003	
2	TGS본부/가스운영팀	남재현 차장	최기열 과장		2110704	
3	TGS본부/가스운영팀	남재현 차장	한진규 과장		2111109	
4	TGS본부/가스운영팀	남재현 차장	최성열 대리		2081005	

# 계약변경 합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2년 10월 1일 "갑"과 "을"이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 제 1 조 (목적)

본 합의서는 "갑"과 "을"이 "기존 계약"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계약변경사항)

"갑"과 "을"은 "기존 계약" 제9조(위탁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 ③ "甲"은 "乙"의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충실도,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을"에게 월별 위탁비의 지급 이외에 성과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④ "甲"과 "乙"은 전항의 성과보상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며, "乙"은 협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본조 제3항의 성과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은 "甲"의 내부기준에 의한다.

## 제 3 조 (합의서의 효력)

- ① 본 합의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며, 본 합의서 상의 내용이 "기존 계약" 상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이 우선한다.

위와 같이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01. 10.

"갑"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을"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이 문 용 (인)

